





김승아

현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언론중재위원회 제3중재부 조사관(2016~2019) 기획, 홍보, 교육, 접수상담팀 등 근무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

위기 관련 커뮤니케이션, <투명성>+<속도>



[포토]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원인은 배터리 결함"

2017.01.23(월) 14:00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은 예상대로 '배터리' 결함이었다. 다만 갤노트7 배터리를 생산한 두 회사(삼성SDI·중국 ATL)의 제품의 문제점은 달랐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 1) **출시 후 2주 내** 발빠른 리콜 2) 기자간담회 개최 후 기술적 원인 설명
- 3) 차기작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부품 전문팀 구성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효과"

위기 관련 커뮤니케이션, <투명성>+<속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논란 사태



"어떠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없었다"

- 침묵 유지
- 초동 대응 실패(시간 지체)
- 여론 악화 속 진정성 없는 사과

"기업의 신뢰 하락"

위원회 조정 처리결과



조 정



> 당사자 출석 의무

(2회 불출석 시, 합의간주 또는 취하간주)

조정성립

-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불성립결정



직권조정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기각

- 쌀 법적 요건 미비
 - (개별적 연관성 부정 등)



각하

- ☑ 기간 도과



취하

- 쌀 자진 취하
- ☑ 심리 전 쌍방 합의 후 취하(사전조율의 장점!)



위원회 조정절차+언론사 대응을 동시에





전자조정신청



우편



이메일

접수



배당

접수 후 14일 이내

심리기일

+1일

기업 관련 사례





인격권이란?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오보의 유형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유형





침해 유형별 조정신청현황



괄호 안은 %

침해유형/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명예훼손	3,478	3,778	4,123	3,093	4,042	3,810
	(98.1)	(96.3)	(96.4)	(97.4)	(98.9)	(96.8)
초상권	28	45	66	41	21	85
	(0.8)	(1.1)	(1.5)	(1.3)	(0.5)	(2.2)
음성권	5	6	13	2	1	6
	(0.1)	(0.2)	(0.3)	(0.1)	(0.0)	(0.2)
성명권	7	12	7	2	3	3
	(0.2)	(0.3)	(0.2)	(0.1)	(0.1)	(0.1)
프라이버시	5	7	12	15	3	1
	(0.1)	(0.2)	(0.3)	(0.5)	(0.1)	(0)
재산상 손해	15	68	47	19	4	4
	(0.4)	(1.7)	(1.1)	(0.6)	(0.1)	(0.1)
기 타	6 (0.2)	8 (0.2)	10 (0.2)	3 (0.1)	11 (0.3)	28 (0.7)
전 체	3,544	3,924	4,278	3,175	4,085	3,9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나?



사실의 적시

☞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명예훼손 **구성요건**

사회적 평가 저하

У 나쁜 인상을 주는 내용인가?



공연성

✓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당사자 특정의 기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가단5118768

방송 – 화면 처리의 중요성



사는

원장 부당한 요구 거절했더니...'아동학대'로 몰려 사직

[기자]

화성의 한 시립 어린이집 교사 최 모 씨는 지난 6월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뒤 사직했습니다.



방송 – 사건 화면 처리의 중요성





방송 – 사건 화면 처리의 중요성



시사 > 전체기사

술자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하는데...지켜보다 떠난 경찰?

입력: 2021-10-15 00:38 / 수정: 2021-10-15 00:45



지난 12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광주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술자리에 현직 경찰 간부도 같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딸 폭행해 숨지게 한 남친, 응급구조사였다" 유가족, 의문 제기

업데이트 ~

⊕ 4 ♥ 26

가해자, 119에 허위 신고...유가족 "골든타임 놓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청원기간

21-08-24 - 21-09-23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 한중 재로 변한 딸을 땅에 묻고 나니 정신을 놓을 지경이지만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억지로 기운을 내서 글을 씁니다.

26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는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제 손과 발을 꼬집에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는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가해자는 2021년 7월 25일 새벽 2시 50분경, 딸의 오피스텔 1층 외부 돌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 호흡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는 그렇게 증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가 해자는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국민청원글 캡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확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원칙>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명예훼손 인정 X (Ex 경기도민 A씨, 군인 B씨...)

<예외>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집단에 속한 개별구성원 모두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 ☑ 구성원의 수
- ☑ 집단의 성격
- ⊻ 피해자의 지위



종합판단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¹⁴│ 인정	
1 독도경비대	[37명]
2 국방부 검찰단	39명]
3 모 아파트 동대표	[19명]
4 대전 지역 검사들	[31명]
5 기무사 현역 장성들	[8명]
6 3·19동지회 교사들	[37명]
7 계룡대 해군 법무장교	25명
8 검찰특별수사본부 검사	[10명]
g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21명]
10 서울시장의 비서관 중 한 사람	[4명]

	부정 🖅
1 독립 운동가	
2 노사모 회원	
3 국정원 직원	
4 여성 아나운서	[295명]
5 안성시 공무원들	
6 법성포 굴비업체	[4007H]
7 5 · 18 민주유공자	[7,056명]
8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화 파업 중인 MBC 노조원	[140명]
10 제주 4.3 사건 일으킨 '공산주	의자'

명예와 표현의 자유가 상충할 경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초상권 침해





반드시 얼굴을 찍어야만 초상권 침해일까?

- 얼굴이 아닌 신체사진만으로도 초상권 침해 인정
- '사회통념상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가 기준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 촬영, 작성 거절권 침해로 모자이크만으로 면책 안됨
- 촬영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동의 없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면책 가능성

- 공적 관심사안일 것
- '- 공익 달성 위해 초상을 사용해야만 하는 <mark>필요성</mark>이 있을 것
- 초상권 보호절차(동의 등)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mark>긴급성</mark>이 있을 것
- 공인이 아니라면 모자이크, <mark>음성변조</mark> 등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해야...



초상권 침해





제목 : 벚꽃길 따라 사랑이~♥

^{*} 최초보도(뉴스통신사) ^{**} 손해배상 150만 원

" 사진인용보도(다른 언론사) " 손해배상 400만 원 + 정정보도

동의를 받았어도





제목 : '인생 사진' 찍겠다면서... 초토화된 분홍 약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만 분홍빛이 절정을 이루는 탓에 가족과 친구, 연인과 람객들은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저마다 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관람객: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라고 해서 지금 10월에만 볼 수 있는 습니다. 해시태그 개수만 봐도 3만개가 넘으니까...]

인터뷰 부문 사제 및 손배 100만원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집회, 시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휴일인 10일 제주도와 해안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서울 낮 기온은 33.1도까지 치솟으며 올 들어 최고기온을 기 록했다. 이날 오후 '물총축제'에 참여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연세로에서 물총싸움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염치 불구하고'

(서울=뉴스1) 하경 기자 | 입력 2018-D8-D1 13:37:D9 | 수정 2018.D8.D1 13:37:D9



서울이 39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이 예고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18.8.1/뉴스1

날씨 관련 보도와 초상권



[포토]퍼붓는 장마에도 출근이 우선이다.

입력 2010-07-02 12:10



월요일 출근길부터 내리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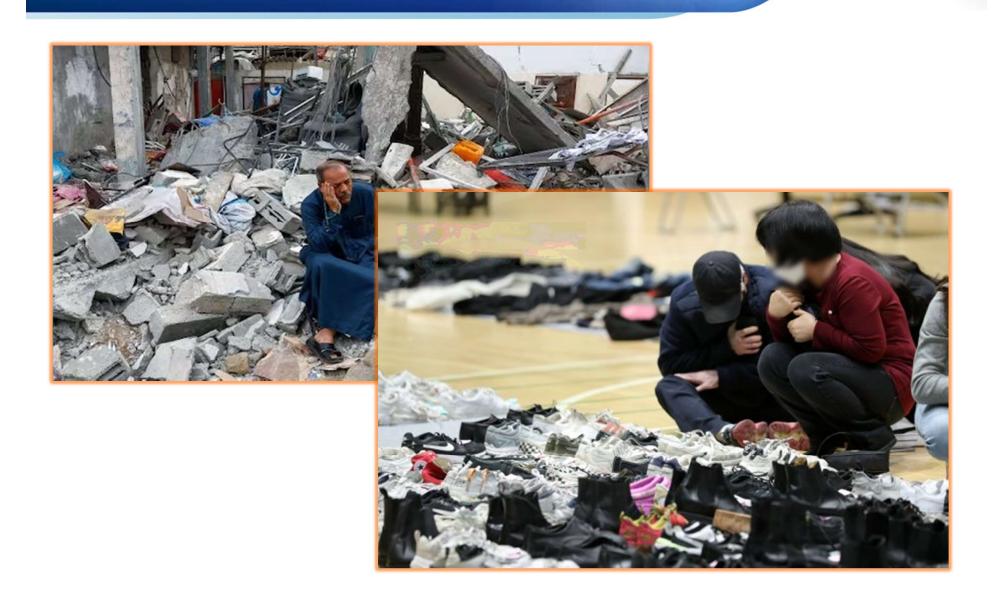
입력 2022.08.08. 오전 9:22



(서울= 기자 = 비가 내린 8일 오전 출근시간 시민들이 서울 종로 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202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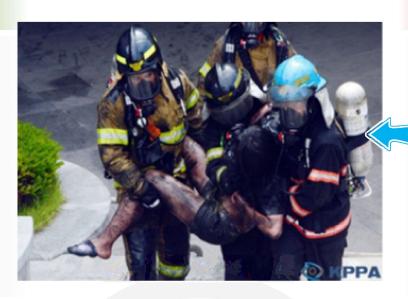
재난 보도와 초상권





면책

- 동의를 구했나?
- 동의 범위에 맞게 사용했나?
- 명예훼손적 내용과 결부되었나?



■ 공공의 목적, 긴급성이 있나?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가?



촬영, 배포, 판권소유에 관한 동의서 NO.(∽승/~/ 먼)

본인은 20 년 10월 23일 서울역 인근 따스한 채움터에서 진행된 독감 예방 접종 행사와 관련으로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취재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인화된 상태의 사진 또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사진파일과 같은 기타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 대한 것과 추후 초상권과 관련하여서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촬영자 또는 촬영자가 속해 있는 단체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 생년월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사생활 침해



9세 여아 상습 성추행 후 日 정착 태권도 관장 실형

2017년부터 경기 의정부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7월 통학버스 안에서 관원인 9세 여아 B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버스에는 A씨와 B양 외에도 20여명의 관원이 타고 있었는데도 A씨는 성추행을 자행했다. 이후에도 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양을 성추행했다.

그 뒤에는 통학버스 외에 태권도장, 건물 엘리베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2020년 6월까지 약 10차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개인 채무 문제로 태권도장 운영을 지인에게 넘겼다. 이후 2021년 일본인 아내·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구해 자꾸

A씨의 범행은 약 3년 후 B양의 부모가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며 드러났다. 0 신고했고,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됐다. A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 인하고 털어놨다. (기사사제)

사생활 침해





(서울=' 뉴스) 김OO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구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 사에 앞서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 뉴스) 김00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구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 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

조정을갈음하는결정

```
사건번호 2020서울조정
청 구 명 손배청구
신 청 인 1. 채
2. 김
3. 김
산청인들 주소 서울 구
산청인들 주소 서울 구
산청인들 주소 서울 구
산청인들 대리인 번호사 채

피신청인 주식회사 뉴스( 뉴스)
서울 구
대표이사 조
대리인 배
전 정 일 2020. 8. 21.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채 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잪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01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 「 뉴스」
- ① 2020, 5, 26, 자, 포토 섹션, 「보건소 선별진료소 찾은 어린이들」 제목의 기사

- 1.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 2명의 뒷모습을 <u>동의 없이 촬영</u>
- 2. 자치구 명, 유치원 체육복 노출로 유치원 특정
- 3. 사생활(코로나 검사 받은 사실) 침해
- 4. 자녀 2명은 더 이상 유치원을 다닐 수 없게 됨
- 5. 피신청인(뉴스통신사)의 기사 전재로 타 언론사(5개) 사진 추가 인용보도

손해배상 400만원
 기사 열람 및 검색차단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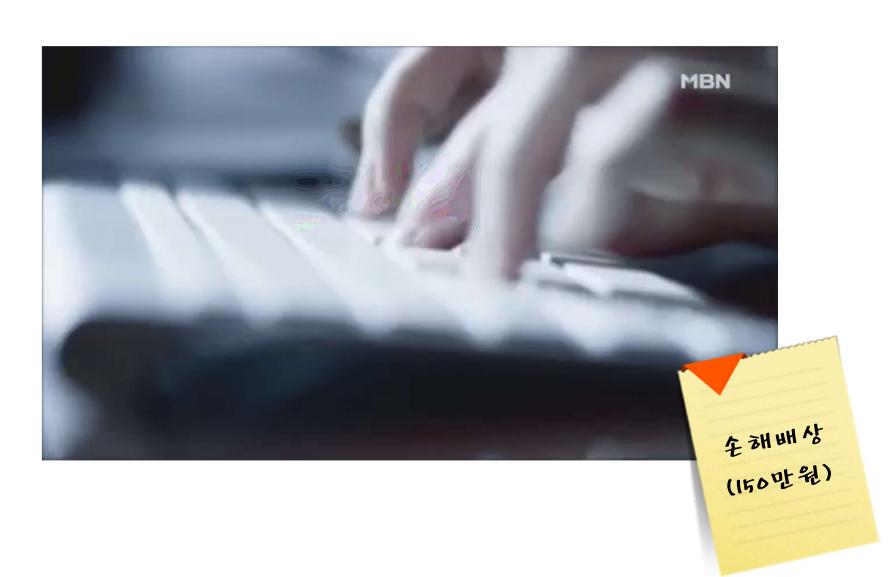
저작권 침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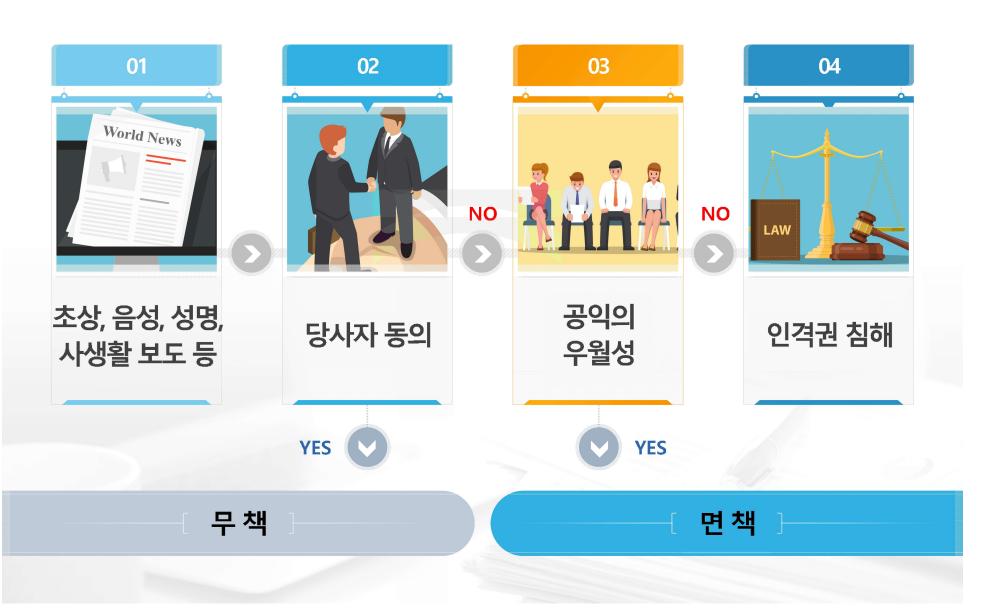
저작권 침해 사례





기타 인격권 침해 흐름도







언론조정사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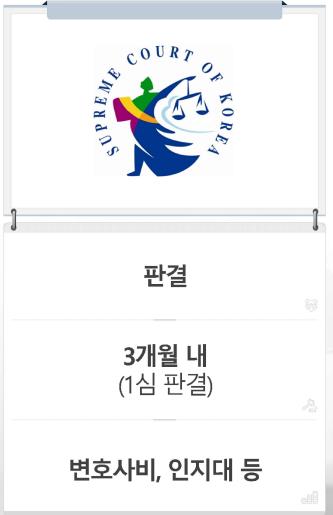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vs 법원







알아두면 좋은 Tip



조정전치주의?

- · NO!
- · 동시 진행 가능
- · '조정 성립 → 소 취하' 전략 구사 가능 (기자 대상 민,형사상 조치 포함)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

- · 조정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
- · 중재 : 분쟁해결을 위원회의 결정에 맡김 (당사자 간 중재합의 필요)

조정신청기간 준수!!!

- · 보도가 있은 날 로부터 6개월
 - +
- · 보도를 안 날 로부터 3개월



청구권의 종류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정정보도란 보도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게 고쳐 보도하는 것** 표현 양식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론보도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 표현 양식 이에 대해 김 모씨는 ...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라고 알려왔습니다 **NEWSPAPER**

청구권의 종류 -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추후보도란 형사사건의 피의 사실 보도한 후 무혐의나 **무죄 결과 시 이를 알려 보도**하는 것 표현 양식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DAILY NEWS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보도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정신적 위자료의 성격 합의 문안 예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년 0월0일까지 000원을 지급한다 이행 지체 시, 00% 비율의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기사삭제청구(열람차단청구)는?







기존 청구권으로 조정신청 조정 과정에서 별도 합의 기 사 **사 제** (댓글 포함)

다양한 합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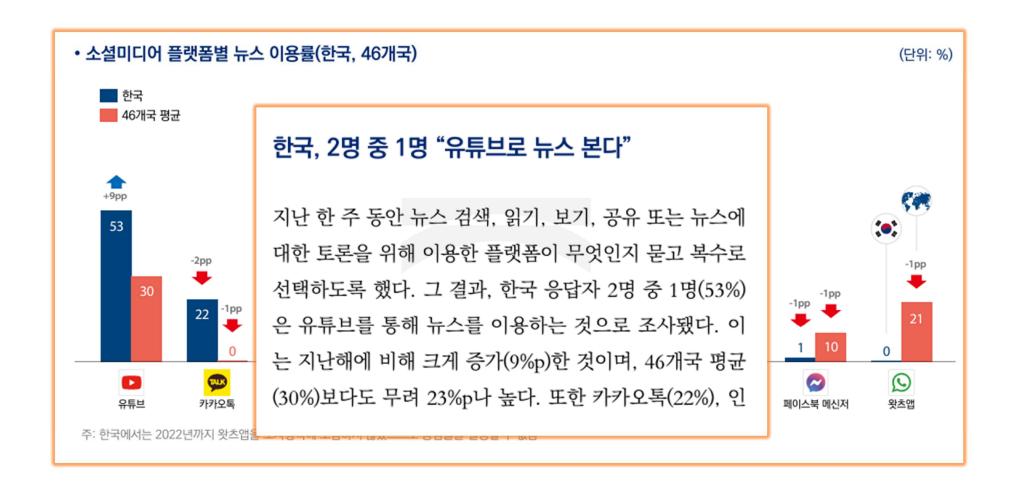






유튜브는 뉴스 매체라고 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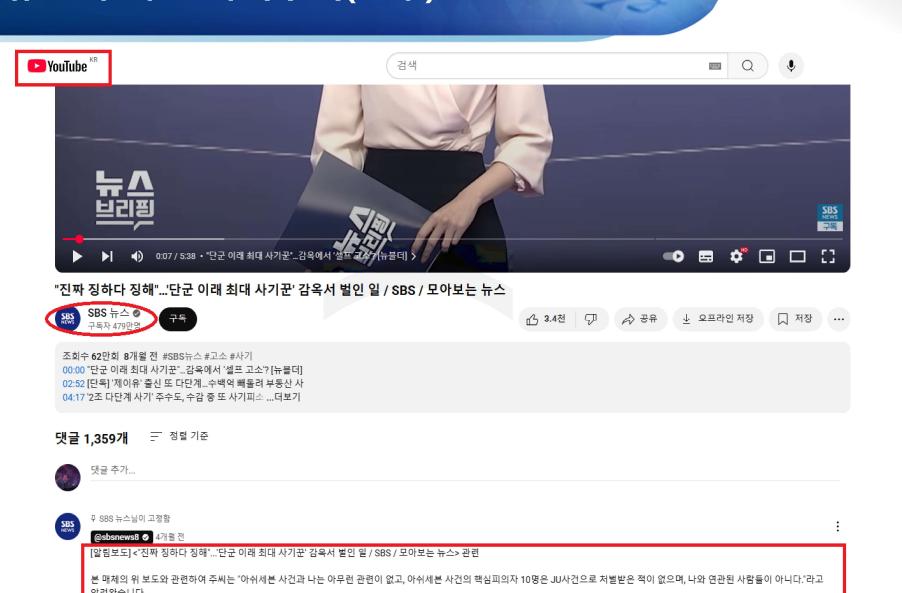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

유튜브에 대한 피해구제(실무)

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주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SBS 8시 뉴스에서 방송하였던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한 3억 6천만 원 사기 피소 사건에서 2015년 12월 17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언론중재위원회 / ah / 2025-04-16 10:52:52

조정심리기일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Q1. 피신청인의 자격은? A. 언론사 대표(중재부 허가 불요), 담당 데스크(허가 용이), 취재기자(허가 엄격) Q3.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석해야 하나요? A. 대화와 설득, 양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 중요!

Q2.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중재부 주도 진행(당사자 대화 제한)
사진·영상 프로젝터 구현 가능
승패의 문제(X), 합의점 찾는 과정(O)

Q4. 그 밖의 유의사항이 있다면?
A. 조정 성립 시 합의서 작성
양측 서명(판결확정과 동일 효력).
확인 또 확인!
(보도일시, 보도방법, 보도문, 이행
강제, 부제소 합의 등)

조정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조 정 합 의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0서울조정000·000(정정·손배)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웹툰 작가 큐니' 미루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본지는 2020년 7월 31일자 연예면에 "웹툰 작가 '큐니', 미루 폭로 예고…유명세 이 용?"이라는 제목으로, 웹툰 작가인 '큐니'가 미루운동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고, 이러 한 발언이 질투실과 열등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큐니'씨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자 SNS에 글을 남겼던 것이고, 미투운동을 이용해 유명해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사적인 감정에 사로 잡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20년 8. 20.(목) 12:00부터 다음 항목들을 이행한다.

가. <언중투데이> 홈페이지 연예면 초기화면의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나. <언중투데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단, 박스처리, 음명 처리, 불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 위의 사항을 점속하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계좌로 2020. 8. 30.(일) 18:00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20. 8. 14.

신 청 인 대리인 파신청인 대리인 조 사 관 01 피해구제 보도

♥ 보도문 제목 및 내용

● 게재방식(시기, 위치, 크기 등)

⊘ 간접강제금(이행강제)

⁰² 손해배상 ⊘ 손해배상 액수

♥ 지급기한, 지급방식

♥ 지연손해금(지급강제)

03 향후 분쟁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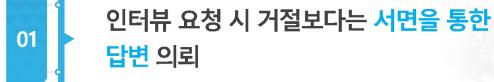
● 부제소 합의(분쟁 종결)

양측 서명 (→ 판결확정과 동일 효력)

합의서 작성시 확인 또 확인! (번복 불가)

효과적인 언론대응 방법





02 인터뷰 시 <u>몰래 촬영/녹음될</u>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기응변적 발언 주의



위원회 교육 안내





위원회 홍보 동영상





